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商標登錄無效

<大法院 第3部 判決>(1980. 6. 10)

裁判長: 大法院判事 양 병 호
關與法官: // 안 병 수 · 유 태 흥

1. 審判請求人(上告人): 김재규(부산중구창선동 1가 36)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유귀희(부산중구신창동 2가 32의 1)
3. 原審決: 特許廳 1980. 1. 12字, 1977年 抗告審判 當第70號審決
4. 主 文: 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

5. 理 由

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 上告理由 第1點에 대하여 判斷한다.

論旨은 요컨대 請求人은 原審에서 本件登錄商標가 無效라는 主張의 하나로서 本件登錄商標는 그 包裝이 그 出願前에 이미 登錄된 本件引用商標의 包裝과 同一 또는 類似하므로 商標登錄要件이 缺與된 것으로써 無效라는 主張을 하였는데 原審은 이 問題를 單純히 本案件問題로 取扱하여 當事者 사이에 利害關係가 成立되는가의 點에 관하여서만 判斷하였을 뿐 위 登錄無效事由主張에 대하여 實質的인 判斷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原審에는 필경 審理未盡 또는 判斷遺脫의 違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事件에 있어서 請求人이 利害關係人이 되는가의 與否는 請求人이 被請求人의 本件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商標를 使用한바 있는가 또는 現在 使用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決定되는 問題라 할 것이므로 앞서본 原審決의 그 右段에서와

같이 請求人은 藥局名 “새 신신약국”으로 本件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種商品의 營業을 營爲하고 있고 또 被請求人이 是正措置를 要求한 再催告書를 받은 事實등이 있다면 그로써 當事者間에 利害關係가 成立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原審으로서는 請求人의 위 主張 즉 本件登錄商標와 引用商標의 同一 또는 類似性에 대하여 審理를 進行하고 나아가 이로인한 其他商品의 識別與否,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지의 與否에 대하여 實質的인 審理를 進行하여 이에 대한 判斷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原審決에는 請求人의 主張에 대하여 審理未盡 또는 判斷을 遺脫한 違法이 있다할 것이므로 論旨은 理由있다.

따라서 나머지 上告理由에 대한 判斷을 할것없이 原審決을 破棄하고 좀더 審理判斷케 하기 위하여 事件을 原審에 還送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參 考 —

抗告審判

1977年 抗告審判(當) 第70號
抗告審判請求人: 김 재 규
被抗告審判請求人: 유 귀 희
위 當事者間의 1976年 審判第99號 (登錄 第43727號 商標의 無效審判) 審決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 本件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審判 및 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 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審 決

1976年 審判第99號
審判請求人: 김 재 규
被審判請求人: 유 귀 희
위 當事者間의 登錄第43727號商標의 登錄無效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審決한다.

主文: 審判請求人의 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審判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